

■ 지하수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안내문(제9조 관련)

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안내문				
위치	시(도)	시(군·구)	읍(면·동)	번지
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일	년 월 일 (년 월 일까지)	
굴착 깊이	m	굴착 지름	mm	
토출관 안쪽 지름	mm	용도(세부 용도)		
동력장치 (설치 깊이)	HP (m)	양수능력	m³/일	
소유자명		시공업체명		
관할 관청(연락처)				
해당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은 「지하수법」 제7조제1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위와 같이 이용·관리하고 있습니다. <영원한 생명수 - 지하수의 미래는 밝습니다>				

비고

1. 안내문의 크기는 300mm(가로)×200mm(세로) 이상으로 하고, 비·바람 등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.
2. 안내문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중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.